

금호타이어, 임금체불로 5억원 배상

광주지법, 1469명에 지급 판결 ... 연초 유동성 위기로 일시 체불

2009년 말과 2010년 초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한 금호타이어가 5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직원 1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수십만원씩 모두 5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는 변론과정에서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만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직원들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공장에만 3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까지 고려하면 부담해야 할 지연 손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원들은 2009년 12월에서 2100년 3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잔여 연월차 수당 등이 3-8개월여 늦게 지급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2>